공 사 시 방 서

1. 공사개요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성북구청에서 발주하는 【2016년 정릉스카이연립 재난예방사업】에 적용한다.

나. 공사의 위치

성북구 정릉동 894-28, 894-29

2. 총 칙

제1조 착공서류

가.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작성방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다. 첨부서류

현장기술자 및 기능공 지정신고서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및 포장기능공)

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확인서, 자격증 사본 및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2) 포장기능공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하는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과정 이수

제2조 : 공사공정계획

가.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장비투입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히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 보고

가. 수급인은 공사실시 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작성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별도 작업지시서상의 준공예정일을 초과하여 시공이 되어야 할 경우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지연 회복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후 공사기한을 연기한다.

다. 본 공사의 계약물량은 추정물량으로 감독관의 차수별 시공지시 물량에 의거 현장조사 후 시공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차수별 준공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빠르고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관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 본 공사경계 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6조 : 연약지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제반시험 시행 후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제7조 : 공사용 가설물

가. 공사용 가설시설물은 공사시공에 필요한 적정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제반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나. 공사용 가설시설물 규모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제시된 규모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 규정되지 않은 가설물 설치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설하여 가설하며, 시설물 설치 미비로 인하여 공사지연, 안전사고 등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라. 공사완공 후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가설물을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 후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 : 용지사용

가. 수급인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이외의 토지의 차용보상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제9조 : 재료관리

공사용 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에 한하여 사용하며, 반드시 납품자의 품질인증서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요구 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의 변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가. 사급자재

1)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되 K.S 규격품이 없을 때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든 자재는 필요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지정된 기관에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된 제품을 사용한다.

4) 사용자재는 제조자로부터 반드시 K.S 인증서, 품질시험성과표 등을 사전 제출받아 감독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5) 사급자재 수불부를 작성 기록하고 준공시 제출한다.

제10조 :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에 대한 시공검사도급자는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사진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정산 요구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 수급인은 감독관의 허가 없이 공중에 해를 미칠 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다.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을 감시,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일반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기, 발주자명, 공사수급자 등을 소정양식에 따라 공사안내 표시판을 설치하며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실무요령에 의거 공사장 안전 및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장 주변 주민들에게 공사일정 등 내용에 대하여 사전 통보 후 공사를 시행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 안전조치

가. 수급인은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끼칠 위험한 장소가 있을 때는 위험표시를 수급인 부담으로 표시하고, 안전사고 및 민·형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고,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사착수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 구역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유류 및 폭약 등 위험물 취급에 대한 제반표시 취급관리

4) 전기, 하수도, 상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6) 위생적 변소와 배수시설

7) 관급자재에 대한 안전시설

8) 기타 필요한 사항

마.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보안조치, 기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2) 수속 완료후 교통표시 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교통제한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및 교통장 애를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바.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안전모자를 써야 한다.

사.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시설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 : 사고의 보고

토지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정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사항을 발겨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 제법규 준수

가. 공사시행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재해구조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 있다.

제15조 :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야간작업 및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 사진촬영

가.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으로 크기 3×4인치로 4부 작성하여 준공시에 사진첩 및 CD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제17조 : 공사일시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주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나. 수급인이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중 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공사중 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 우려가 있을 때

마. 관련되는 타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8조 : 공기연장

가.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귀,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 공사기간중 강우일수 및 강설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강우, 강설일수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제19조 : 준공검사

가. 수급인은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제20조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 수급인 의무

가.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부합되도록 하며, 수급인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을 시행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해당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을 수급인 부담으로 관리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손상을 받은 공사 부분이나 표준 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이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법령에 의해 배치한 현장대리인을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시켜서는 아니된다.

제22조 : 공사방법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 입찰유의서 및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시설공사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본 특별시방서, 설계도서에 의하며, 만일 현장여건상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공사시행중 발주처의 작업지시사항과 현장여건이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변경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작업지시서상의 공사기한내 완료 불가시에는 공사기한 연기원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후 연기조치할 수 있으며, 공사완료시에는 작업완료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되, 감독경유후 발주처에 문서접수한 날을 준공일자로 하며, 만일 준공지연시에는 관계법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 : 본 공사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제24조 : 발생품

본 공사와 관련하여 생긴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지정장소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25조 : 건설폐기물 처리

시공자는 폐기물발생시 즉시 상차·운반처리하여 주민통행불편이나 환경저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26조 : 본공사 현장사무실용 컨테이너와 울타리등 부대시설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공사기간동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원상 복구한다.

제27조 : 도급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습득하는 공공시설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 : 공사중 검사시험을 실시하여 부적합한 판정으로 지정된 부위는 시공

자부담으로 철거와 재시공 조치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법상의 제제를 할 수 있다.

제29조 : 설계변경조건

가. 물량의 변동이 발생한 때

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할 때

다.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공사물량의 변동이 있을 때

3. 콘크리트공

가. 사용재료

구조물 콘크리트는 KSF 4009에 규정된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상 시멘트콘크리트 타설시 사용골재에 따른 시방배합을 시행하여 소정의 값을 얻어 시공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강도

재령 28일 강도	슬럼프값 (cm)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비 고
210Kg/cm2	8 ± 2.5	25 mm	구조물

다. 콘크리트 타설

1) 시공전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하여 사전 검측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평균기온이 4℃ 이하일 때는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한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설하여야 한다.

3) 타설시 콘트리트의 온도는 10℃~20℃를 원칙으로 하며, 서중 콘크리트는 30℃ 이하로 한다.

4) 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사용(거푸집 충격)하고 (수직으로 간격 60cm 이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사용자는 레미콘 송장에 반드시 출발시간 확인 및 도착시간을 기록하고, 시간 경과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기온 25℃ 이상 90분 이내, 25℃ 이하 60분 이내)

라. 양　생

1) 타설 후 최소 5일간은 콘크리트표면을 습윤상태로 유지하고 2℃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타설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매트, 가마니등을 적셔서 덮거나 또는 살수를 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4) 거푸집이 건조하면 살수를 실시한다.

마. 마　감

1) 타설 및 다짐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전에 수정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3) 거푸집을 철거후 벽체 표면에 곰보등 흠이 생기면 이 부위를 최소 2.8cm 깊이로 제거한 후 시멘트풀로 칠한후 1: 2의 몰탈로 채워야 한다.

바. 시　험

1)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슬럼프 시험은 타설 당일 1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1회 시험용공시체는 3개를 제작하며 이때 제작틀은 골재의 최대치수 40mm 이하는 대형을, 25mm 이하는 소형을 사용한다.

4) 레미콘 압축강도 시험은 150m^3 당 1회 이상 실시하며, 1개소당 타설량이 10m^3 미만의 산재한 구조물은 필요시마다 실시한다.

4. 기타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제3호의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1. [별지 제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공사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월 :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첨 부 : 1. 현장대리인계
2. 안전관리자 선임계
3. 도급내역서
4. 공사예정공정표
5. 현장기술자 조직표

년 월 일

수급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성북구청장 귀하